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 (법률제정) ‘18. 2.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환자·가족의 뜻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유보·중단이 가능해짐
- (제도운영의 기반) 연명의료를 받지 않길 원하는 일반국민·환자의 자기결정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의 기반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내용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u>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 수행 가능</u>	19세 이상 성인은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u>지정 받은 등록 기관에서만</u>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음
설치 방식	의료기관 자체 설치·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 (위탁협약 제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만 수행 가능
 - 단, 윤리위원회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인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윤리위원회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어려운 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 체결을 통해 윤리위원회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

법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현황**

○ (권역별 공용윤리위원회 및 관할 지역)

공용윤리위원회	관할 지역
고대구로병원	서울 서부, 강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동부, 강원
국립암센터	경기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전북대학교병원	광주, 전북, 전남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경북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울산, 경남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충남대학교병원	충남, 대전, 세종
인하대학교병원	인천

○ (운영현황)

‘19.9월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총 10개소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중

○ (위탁협약체결 현황) ‘18년 1개 기관, ’ 19년 38개 기관

기관별 / 구분	‘18년 위탁협약	‘19년 위탁협약	합계
고대구로병원	0	7	7
국립중앙의료원	0	2	2
국립암센터	0	6	6
충북대학교병원	0	2	2
전북대학교병원	0	3	3
영남대학교병원	1	4	5
부산대학교병원	0	5	5
제주대학교병원	0	6	6
충남대학교병원	-	3	3
합계	1	38	39

* 위탁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된 37기관 포함

□ 지원사업 안내

○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안내

- (목적)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지원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 인력 및 운영비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공용윤리위원회 운영 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원 내용	지정 기관 별 기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기존 지정 기관 : 총 60백만원(인건비 40백만원+운영비 20백만원), 1~12월 운영 * 신규 1차 지정 기관 : 총 45백만원(인건비 30백만원+운영비 15백만원), 4~12월 운영 * 신규 2차 지정 기관 : 총 20백만원(인건비 13백만원+운영비 7백만원), 9~12월 운영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현황, 정보처리시스템 서식 작성 및 오류 건수 등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선정기관	고대구로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총 9곳: '18년 8개소, '19년 2개소 선정)

- (추진결과) '18년 8개 기관, '19년 2개 기관 추가 선정 및 지원(계속)

○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비용 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중소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19년 위탁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 (사업내용) 300병상 미만 기관 위탁비용 국고지원

구분	내용
대상 기관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
지원 내용	위탁비용 200만원(협약 후, 공용윤리위원회에 지급)
지원 기간	협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사업 현황	- 1차 신청 완료(19.4.22.~19.5.10.), 21개 기관 지원 결정 - 2차 신청 완료(19.7.3.~19.7.17.), 16개 기관 지원 결정 - 3차 접수 예정(19.9.9.~19.9.30.)

- (추진결과) ‘19년 1차 공모 21개 기관 선정 및 지원(계속)
19년 2차 공모 16개 기관 선정 및 지원(계속)
- (하반기 계획) ‘19년 3차 공모 추진(예정)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관리팀	02-778-7564 med_nibplst@nibp.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	https://www.lst.go.kr/

가.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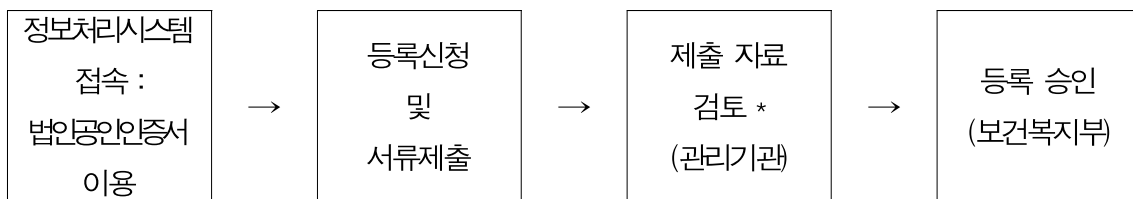
- 윤리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탁한 의료기관(위탁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위탁협약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위탁협약서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intra.lst.go.kr)을 통해 등록

✓ 위탁 내용	✓ 위탁 기간	✓ 위탁 비용
✓ 위탁에 따른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위탁의 종료 · 해지 등에 관한 사항	

나. 제출서류

- 등록 신청공문 1부(신청 기관장 발행, 스캔 후 파일 첨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위탁협약서

다. 등록 절차



※ 신청 이후의 진행 상황은 시스템 ‘신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자료보완 요청’ 함

문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운영관리팀	02-778-7564 med_nibplst@nibp.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포털	https://www.lst.go.kr/